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시행 2020. 5. 27] [환경부령 제863호, 2020. 5. 25, 일부개정]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_전략환경영향평가) 044-201-7276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환경영향평가업) 044-201-7277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소규모환경영향평가) 044-201-7275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_환경영향평가) 044-201-728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①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9.>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려는 구체적 이유와 근거가 명시된 검토서 1부
2. 관계 전문가 의견서 1부

③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려는 구체적 이유와 근거가 명시된 검토서 1부
2. 관계 전문가 의견서 1부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협의 여부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1. 30.]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1. 29.>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목적 및 개요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3. 토지이용구상안(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지역 개황(槪況)(대상계획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
5.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의 설정 방안
6. 법 제13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재방법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 등에게 공람하게 할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6. 11. 30.>

제4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 추천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개발기본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정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지역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사람(이하 “의견진술자”라 한다)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30.>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자가 추천된 경우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의견진술자를 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를 정할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공청회의 진행) ①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의견진술자는 해당 개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한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③ 공청회 주재자는 의견진술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의견진술자 상호간에 질의 ·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조(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에서 제외되는 최소 지역범위) 영 제20조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최소 지역범위”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범위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를 말한다.

제7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영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지 않은 경우
2. 영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2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공람하게 한 경우
3. 영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게시하지 않은 경우
4. 영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영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영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발기본계획의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6. 영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영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7.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공람 기간이 종료된 날(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공청회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의견 재수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의견의 재수렴 신청 사유와 그 근거가 명시된 자료 1부
2. 의견의 재수렴을 위한 최소신청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한 주민 등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2항에 따라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한 주민 등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주민 등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본조신설 2018. 11. 29.]

[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18. 11. 29.>]

제7조의3(협의 내용의 조치결과 · 조치계획의 통보)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 · 조치계획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 12. 2.]

[제7조의2에서 이동 <2018. 11. 29.>]

제8조(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3. 토지이용계획안
4. 지역 개황(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
5.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의 설정 방안
6.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의 해당 여부(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법 제25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
8.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및 반영 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재방법 등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영 제35조제1항1호에 따른 시장 · 군수 · 구청장(이하 "주관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라 한다)은 영 제36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 등에게 공람하게 할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0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주관 시장 · 군수 ·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은 의견진술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주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자가 추천된 경우 주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의견진술자를 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④ 주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를 정할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공청회의 진행) ①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의견진술자는 해당 계획과 관련된 환경보전방안에 한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③ 공청회 주재자는 의견진술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의견진술자 상호간에 질의 ·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영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지 않은 경우
2. 영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2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공람하게 한 경우
3. 영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게시하지 않은 경우

4. 영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영 제4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영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6. 영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영 제4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7. 영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36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공람 기간이 종료된 날(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공청회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의견 재수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의견의 재수렴 신청 사유와 그 근거가 명시된 자료 1부
2. 의견의 재수렴을 위한 최소신청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③ 사업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한 주민 등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2항에 따라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한 주민 등이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주민 등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본조신설 2018. 11. 29.]

제13조(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반영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①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2. 2.>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에 포함된 시설물이 변경(용도 변경만 해당한다)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구간별 공사가 일부 완료되어 환경영향 저감시설 등을 폐쇄하거나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환경영향 저감시설을 당초의 시설규모 · 용량 이상으로 정비하는 경우
3.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중 원형보전지역, 경관녹지, 완충녹지 등 환경보전을 위한 녹지를 확대하려는 경우
4. 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승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그 변경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6. 1. 14., 2018. 11. 29., 2019. 12. 20.>

1.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공사
   가. 안전울타리, 현장사무소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나. 해당 사업에 따른 주민 등의 이주에 따라 사업지구 내 화재발생 및 폐기물 무단투기 등을 방지하고, 주변 주민이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공사
   다. 해당 사업의 기공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2. 문화재 발굴조사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장애물 등을 철거하기 위한 공사
3. 해당 사업의 성토(흙쌓기)를 위해 사업장 부지 내에 토사적치장(土砂積置場)을 설치하는 공사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
5. 협의기관의 장이 토지의 형질이나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② 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전에 공사를 시행하려면 법 제2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절차를 생략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사전공사의 범위 등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 2016. 11. 30.>

제16조(관리대장의 비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7조(관리책임자 자격기준)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영 별표 5 제3호가목1) 또는 같은 호 나목1)의 자격인정 범위에 따른다. <개정 2019. 12. 30.>

② 사업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기 곤란하거나 협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협의 내용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 2016. 1. 14., 2017. 5. 30.>

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이하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한정한다) 분야로 등록한 자

③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1. 최초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
2. 통보된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경우: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

제18조(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 및 지정기간)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의 확인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2. 협의 내용 이행 여부의 확인 및 관리대장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3. 협의 내용 이행을 위한 환경오염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 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리책임자의 지정기간은 해당 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제19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제19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의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은 영 별표 1에 따른 평가항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을 말한다. <개정 2016. 1. 14.>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설정된 항목
2. 그 밖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통보할 때에 협의기관의 장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한 항목

③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제출 시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 1. 14., 2018. 11. 29.>

1. 환경부장관: 2부. 다만,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또는 영 제55조의3에 따른 기관 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부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2. 승인기관의 장: 1부

④ 제3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조사결과를 매년 통보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12. 2.>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준공·중지·재개의 통보) 법 제37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준공, 공사 중지 또는 공사 재개의 통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해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는 대상사업의 착공통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5. 25.>

[제목개정 2020. 5. 25.]

제21조(협의 내용 등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법 제38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협의 내용 및 그 이행 상황
2. 승계의 일시, 내용 및 사유
3. 협의 내용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이행주체 등

제22조(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서식) 영 제56조에 따른 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재평가기관에 대한 위탁) 법 제41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의 선정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필요한 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3. 재평가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사업자와 재평가기관이 협의한 사항

[본조신설 2018. 11. 29.]

[종전 제22조의2는 제22조의3으로 이동 <2018. 11. 29.>]

제22조의3(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 추진계획의 공고) 영 제67조의4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명칭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발주청명
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주요 내용
4.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의 예산 규모
5. 입찰공고 예정일
6. 입찰의 참여 신청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입찰참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 1. 14.]

[제22조의2에서 이동 <2018. 11. 29.>]

제23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법 제53조제5항제2호 · 제5호 및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 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12. 2., 2016. 1. 14., 2017. 5. 30.>

제23조의2(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존기간 등) ① 법 제53조제5항제3호 본문 및 법 제56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4. 12. 2., 2016. 1. 14.>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해당 계획의 승인 등이 된 후 10년
2. 환경영향평가서등(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제외한다):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이 준공된 후 10년
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의 기초자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협의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5년(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경우에는 3년)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초자료의 종류,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의2에서 이동 <2016. 1. 14.>]

제2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서식 등) ① 영 제68조제1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68조제1항 및 제69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신청 시 제출된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그 사실을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이하 "정보화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9.>

제25조

[제22조의2로 이동 <2014. 12. 2.>]

제26조(재대행하게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무) 법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 항목을 조사·측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 11. 29.>

1. 자연생태환경의 조사, 자연생태환경의 영향 예측·평가 및 자연생태환경 보전방안(영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재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토양오염도의 조사·측정(「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재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전문성·기술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재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목개정 2018. 11. 29.]

제26조의2(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 ① 법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하도록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재대행하게 하려는 환경영향평가등의 개요
2.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대상 규모, 평가에 소요되는 금액 및 참여하는 기술인력 등이 명시된 환경영향평가등 업무 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발주자는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7일의 범위에서 통지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업무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항목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 12. 30.>

[본조신설 2018. 11. 29.]
[종전 제26조의2는 제26조의3으로 이동 <2018. 11. 29.>]

제26조의3(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환경영향평가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9.>

1.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7. 5. 30.]
[제26조의2에서 이동 <2018. 11. 29.>]

제27조(업무의 폐업·휴업 신고 등) ① 법 제57조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으면 그 사실을 정보화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9.>

제28조(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화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9.>

제29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수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서류(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의 체결 실적: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의 변경(계약기간, 참여 기술자 또는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실적: 대행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대행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보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9.>
1. 대행계약의 체결(변경) 실적 보고: 계약서(대행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내용이 반영된 계약서를 말한다) 사본 1부
2.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보고: 대행계약의 발주자가 발급한 대행계약 이행증명서(참여 기술자 명단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및 세금계산서 사본(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발주청이 아닌 자가 발주한 경우만 해당한다) 각 1부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간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5. 30.]

제30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등의 공고) ①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화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 12. 2., 2017. 5. 30., 2018. 11. 29., 2019. 12. 30.>
1.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종류별 대행 건수, 평가대행 비용 등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2. 환경영향평가업자별 처분 내용 및 처분 사유를 포함한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② 수탁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인력 등록현황 및 기술인력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 2019. 12. 30.>
1.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2.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인력 등록현황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해당 수탁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14.>

제30조의2(교육훈련의 연기신청) 영 제69조의3제2항에 따라 최초교육 및 보수교육의 기일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77조제6항에 따른 교육·훈련 위탁기관의 장에게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제35조에서 이동 <2017. 5. 30.>]

제30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① 법 제6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1.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2.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사본 1부
3.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1부
4.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환경영향평가 경력확인서[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및 해당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교육·훈련 이수증 사본 1부
6.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발주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상훈(賞勳) 증서 사본 1부

②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법 제62조의3제3항에 따른 근무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을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사진은 최초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법 제62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무처 또는 자격에 관한 사항
2. 학력 또는 경력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⑤ 수탁기관은 별지 제13호의7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대장에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발급내용 및 발급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경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수탁기관은 제6항 후단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6항 후단에 따라 승인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수수료 및 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5. 30.]

제30조의4(환경영향평가기술자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62조의4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7. 5. 30.]

제31조(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① 영 제77조제2항제5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자격시험 실시기관" 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경우 일시·장소·방법·과목·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자격시험 시행일 60일 전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②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4., 2017. 5. 30.>

④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응시원서 접수 이후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자격시험일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제32조(일부 면제대상 확인자료의 제출) 영 제73조에 따라 자격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실무경력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제33조(자격증 발급 등) ①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그 자격증이 손상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또는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와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③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사 명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④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5. 30.>

제34조 삭제 <2016. 1. 14.>

제35조

[제30조의2로 이동 <2017. 5. 30.>]

제36조(행정처분에 따른 자격증의 관리)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사람의 자격증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정지된 사람의 자격증에 그 정지기간 및 정지사유를 적어야 하며, 정지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그 자격증을 해당 자격취득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7조(환경영향평가사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에 대한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7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법」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행정처분 대상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위반행위(위반행위의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4. 처분 내용(처분권자,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을 포함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18. 11. 29.]

제38조(규제의 재검토) ①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6.>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4. 12. 16., 2020. 5. 25.>

1.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 2015년 1월 1일
2. 제20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준공, 공사 중지 또는 공사 재개의 통보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3. 제21조에 따른 협의 내용 등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 4. 30.]

부칙 <제467호, 2012. 7.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호의 개정규정 중 "(영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201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제2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21조 및 제22조"를 "같은 법 제29조, 제32조 및 제33조"로,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로, "사전환경성검토"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법 제25조의6과 제26조의2"를 "같은 법 제45조"로 한다.

③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다목, 같은 조 제4항제2호아목 및 같은 항 제3호사목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각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하고, "사전환경성검토서"를 각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제39조제1항제9호 단서 및 제41조제7항제2호라목 단서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각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하고, "사전환경성검토서"를 각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부칙 <제553호, 2014. 4. 30.>(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0호, 2014. 12.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1호, 2014. 12. 16.>(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6호, 2016. 1. 14.>

이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0호, 2016. 1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가목, 같은 표 제3호자목, 같은 표 제4호가목 · 나목 · 다목 · 바목, 같은 표 제12호라목, 같은 표 제15호마목 및 같은 표 제16호나목 ·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사업을 착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00호, 2017. 5. 30.>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별표 3의2,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3호의7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0호, 2018. 11. 29.>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3호, 2019. 12. 20.>(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8호, 2019.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3호, 2020. 5. 25.>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8. 11. 29.>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제19조제1항 관련)

대상사업		조사기간
1. 도시의 개발사업	가. 영 별표 3 제1호가목의 도시개발사업 또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나. 영 별표 3 제1호나목의 정비사업 다. 영 별표 3 제1호라목의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라. 영 별표 3 제1호마목의 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마. 영 별표 3 제1호바목의 공동집배송센터조성사업 바. 영 별표 3 제1호사목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사. 영 별표 3 제1호아목의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개발사업 아. 영 별표 3 제1호차목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자. 영 별표 3 제1호카목의 마을정비구역의 조성사업 차. 영 별표 3 제1호타목의 혁신도시개발사업 카. 영 별표 3 제1호파목의 역세권개발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타. 영 별표 3 제1호다목1)의 운하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파. 영 별표 3 제1호다목2)의 유통업무설비, 같은 목 3)의 주차장시설 및 같은 목 4)의 시장 하. 영 별표 3 제1호자목의 학교의 설치공사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영 별표 3 제2호 각 목의 대상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및 사업 준공 후 입주율이 70퍼센트에 도달한 다음 해부터 3년간(사업 준공 후 7년이 되는 해에도 입주율이 70퍼센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에는 7년이 되는 해에만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
3. 에너지 개발사업	가. 영 별표 3 제3호가목의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해저광업 나. 영 별표 3 제3호나목의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	사업 착공 시부터 채광 완료 후 3년까지
	다. 영 별표 3 제3호다목4)·라목4)의 회(灰)처리장 라. 영 별표 3 제3호다목5)·라목5)의 저탄장(貯炭場) 마. 영 별표 3 제3호바목의 송유관 중 저유시설(貯油施設)의 설치공사 바. 영 별표 3 제3호사목의 저유시설 또는 석유비축시설의 설치공사 사. 영 별표 3 제3호아목의 가스사업의 설치공사 중 저장시설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아. 영 별표 3 제3호다목1)·라목1)의 발전소 자. 영 별표 3 제3호마목의 열발생설비의 설치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차. 영 별표 3 제3호다목2)·라목2)의 지상송전선로 카. 영 별표 3 제3호다목3)·라목3)의 옥외변전소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4. 항만의 건설사업	가. 영 별표 3 제4호가목1)·나목1)·라목1)·마목1)·바목1)의 외곽시설 나. 영 별표 3 제4호가목2)·나목2)·라목2)·마목2)·바목2)의 계류시설 다. 영 별표 3 제4호가목3)·나목3)·라목3)·마목3)·바목3)의 어항시설 또는 항만시설로서 공유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라. 영 별표 3 제4호다목의 준설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준설 완료 후 5년까지

	마. 영 별표 3 제4호마목의 항만재개발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바. 영 별표 3 제4호가목3)·나목3)·라목3)·마목3)·바목3)의 어항시설 또는 항만시설로서 공유수면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지 않는 것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5. 도로의 건설사업	영 별표 3 제5호의 도로건설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6. 수자원의 개발사업	영 별표 3 제6호 각 목의 대상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7. 철도의 건설 사업	영 별표 3 제7호 각 목의 대상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8. 공항의 건설사업	가. 영 별표 3 제8호1)의 비행장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나. 영 별표 3 제8호2)의 활주로 건설 다. 영 별표 3 제8호3)의 공항개발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영 별표 3 제9호의 하천공사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영 별표 3 제10호 각 목의 대상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가. 영 별표 3 제11호가목의 관광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나. 영 별표 3 제11호나목의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

	다. 영 별표 3 제11호다목의 온천개발사업	까지
	라. 영 별표 3 제11호라목의 공원사업 마. 영 별표 3 제11호마목의 도시·군계획사업중 유원지 내 시설 설치사업 바. 영 별표 3 제11호바목의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12. 산지의 개발사업	가. 영 별표 3 제12호가목1)의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나. 영 별표 3 제12호가목2)의 초지조성, 같은 목 3)의 산지전용허가 다. 영 별표 3 제12호나목의 임도설치사업 라. 영 별표 3 제12호다목의 산림복지시설의 조성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가. 영 별표 3 제13호가목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업의 조사기간을 준용한다.
	나. 영 별표 3 제13호나목의 지역개발사업 다. 영 별표 3 제13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한미군시설사업 또는 국제계획지구의 개발사업, 평택시개발사업 라. 영 별표 3 제13호바목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마. 영 별표 3 제13호사목의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바. 영 별표 3 제13호아목의 기업도시개발사업 사. 영 별표 3 제13호차목의 친수구역조성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아. 영 별표 3 제13호자목의 신공항건설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가. 영 별표 3 제14호가목의 체육시설 설치공사 나. 영 별표 3 제14호마목의 경마장 설치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다. 영 별표 3 제14호나목의 경륜 또는 경정시설 설치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라. 영 별표 3 제14호다목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사업 마. 영 별표 3 제14호라목의 청소년수련지구 조성사업	
15. 폐기물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사업	가. 영 별표 3 제15호가목의 최종처리시설중 매립시설 나. 영 별표 3 제15호가목의 중간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다. 영 별표 3 제15호나목1)의 분뇨처리시설 라. 영 별표 3 제15호나목2)의 처리시설 마. 영 별표 3 제15호나목3)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시설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16.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가. 영 별표 3 제16호가목의 국방·군사시설 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나. 영 별표 3 제16호나목1)·다목1)의 비행장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다. 영 별표 3 제16호나목2)·3)의 활주로의 건설 및 그 밖의 사업 라. 영 별표 3 제16호다목2)·3)의 활주로의 건설 및 그 밖의 사업 마. 영 별표 3 제16호라목의 해군기지내 시행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가. 영 별표 3 제17호가목의 토석·암석·모래·자갈 또는 광물의 채취사업 나. 영 별표 3 제17호나목의 산지에서의 토석·광물 채취사업 다. 영 별표 3 제17호다목의 채석단지의 지정 라. 영 별표 3 제17호라목의 해안에서의 광물 채취사업 마. 영 별표 3 제17호바목의 해안에서의 골재 채취사업 바. 영 별표 3 제17호사목의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사업 착공 시부터 채취 완료 후 3년까지
	사. 영 별표 3 제17호마목의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사업 착공 시부터 골재채취 종료 시까지

비고

1.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승인기관장등'과 협의한 경우에는 위 표에 따른 조사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조사항목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가. 특별한 주변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평가서의 협의 내용 통보 시 사후환경영향조사 내용 등을 조정한 경우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적어 더 이상의 사후환경영향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발생한 경우

2. 영 별표 3 비고10에 따른 복합사업 중 별도로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받은 사업은 해당 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을 적용한다.

3. 조사항목 중 보존·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동식물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4. 항목별 조사주기는 환경상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주기로 한다(분기, 반기, 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제23조 관련)

1.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가. 현황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는 경우

1) 환경현황을 조사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환경현황을 적정하게 조사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제시한 경우

2)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자연도,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녹지등급 등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한 경우

나. 경사분석, 동·식물 조사자료 등 현황조사 자료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

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현황조사 및 작성 등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참여한 것으로 거짓 작성한 경우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협의기관이 적절하게 검토하기 어

렵게 하거나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제출 현황과 그 반영 여부 등을 누락한 경우

나.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전공사 또는 해당 사업을 위한 벌목공사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현황 자료에 제시하지 않은 경우

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내용,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그 사실과 이유를 누락한 경우

라.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안에 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특정도서 등 환경보전을 위해 관계 법령·조례 등에 의해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이 있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

마. 환경영향평가서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문헌 등에 제시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누락한 경우

바. 영 제21조제2항, 제46조, 제60조에 따른 평가서 작성방법에 따라 문헌조사 및 탐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을 누락한 경우

사. 환경영향조사가 시행된 지점 또는 지역에서 협의기관의 장이 선정한 2명 이상의 관련 전문가가 통상적인 주의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을 누락한 경우

아. 학교, 종합병원, 노인전문병원, 공공도서관, 보육시설, 공동주택, 취수·정수장, 문화재, 박물관 및 미술관 등 환경변화에 민감한 시설물을 누락한 경우

자. 공장·공항·도로·철도 등 환경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시설물 및 하수종말·분뇨·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누락한 경우

차.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평가 항목·범위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누락한 경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6. 11. 30.>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되,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차목의 경우에는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환경영향평가업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상속 또는 합병 전에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한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지난 처분 및 처분기간 중에 있는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의 법인이 승계한다.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업무정지: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

2) 등록취소: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으로 경감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관련 조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받은 경우	법 제58조제1항 제4호의2	업무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나.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58조제1항 제5호				
1)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가)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3분의 1 미만 부족한 경우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나)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3분의 1 이상 부족한 경우		업무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2)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가)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2명 미만 부족한 경우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나)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2명 이상 부족한 경우		업무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3) 1개월 이상 사무실 또는 실험실이 없는 경우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4) 구비하여야 하는 장비가 부족한 경우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5) 측정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능력(장비·기술인력 등) 없는 자와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다. 법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58조제1항 제6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라. 법 제5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	법 제58조제1항 제8호	업무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마. 법 제56조제1항제2호를	법 제58조제1항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환경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제8호				
1)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2) 환경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바. 제56호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이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제1항 제8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사. 법 제56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법 제58조제1항 제8호	업무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아. 법 제56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도급받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법 제58조제1항 제8호	업무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자. 법 제56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정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제1항 제8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차. 등록 후 2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환경영향평가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58조제1항 제4호	경고	등록 취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신설 2017. 5. 30.>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0조의4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인정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된 경우	법 제62조의4 제1항제1호	인정 취소			
나.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또는 법 제65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법 제62조의4 제1항제2호	인정 취소			

다.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또는 법 제65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정지된 경우	법 제62조의4 제1항제3호	인정정지(「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또는 법 제65조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으로 한정한다)			
라.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의4 제1항제4호	경고	인정정지 1개월	인정정지 3개월	인정정지 6개월
마. 다른 사람에게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법 제62조의4 제1항제5호	인정정지 3년	인정정지 3년	인정정지 3년	인정정지 3년
바.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	법 제62조의4 제1항제6호	인정정지 3개월	인정정지 6개월	인정정지 9개월	인정정지 12개월
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62조의4 제1항제7호	인정정지 6개월	인정정지 12개월	인정정지 18개월	인정정지 24개월
아. 다른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요청한 경우	법 제62조의4 제1항제8호	인정정지(해당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으로 한정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8. 11. 29.>

환경영향평가사 행정처분의 기준(제37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법조항	행정처분 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65조 제1항제1호	자격취소
2. 법 제6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65조 제1항제4호	자격취소
3.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자격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다시 시작한 경우	법 제65조 제1항제2호	자격취소
4.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가.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나. 1회 적발된 경우	법 제65조 제1항제2호	 자격취소 자격정지 3년
5. 법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사의 업무를 행하게 한 경우 가. 2회 이상 적발한 경우 나. 1회 적발한 경우	법 제65조 제1항제6호	 자격취소 자격정지 3년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가.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나. 1회 적발된 경우	법 제65조 제1항제3호	 자격취소 자격정지 3년
7.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특별한 사유 없이 4회 이상 연달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나. 2회 이상 연달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65조 제1항제5호	 자격정지 2년 자격정지 6개월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6. 11. 30.>

행 정 기 관 명

수신 환경부장관
(경유)
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관한 협의요청서**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협의요청서를 제출합니다.

계획 개요	소관계획명	
	계획의 성격	
	계획의 수립목적	
	계획의 내용	
	계획의 수립주기	
	계획의 범위	
고려 사항	환경영향의 중대성	[ ] 상당 [ ] 불분명 [ ] 미미
	환경성평가의 가능성	[ ] 가능 [ ] 어려움
	다른 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	[ ] 있음 [ ] 없음
관계 전문가 의견(요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려는 이유		
작성자 및 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 (작성자) ○ (책임자)

붙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려는 구체적 이유와 근거가 명시된 검토서 1부.
2. 관계 전문가 의견서 1부.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16. 11. 30.>

행 정 기 관 명

수신 환경부장관
(경유)
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에 관한 협의요청서**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협의요청서를 제출합니다.

계획 개요	소관계획명	
	계획의 성격	
	계획의 수립목적	
	계획의 내용	
	계획의 수립주기	
	계획의 범위	
	관련 상·하위 계획과의 위계관계	

다른 계획에서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내용 (동일한 평가가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	
관계 전문가 의견(요지)	
작성 및 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 (작성자) ○ (책임자)

붙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려는 구체적 이유와 근거가 명시된 검토서 1부.
2. 관계 전문가 의견서 1부.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11. 30.>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사업장 위치		
사업자		
의견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 개최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 ], 불필요[ ] - 이유(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처리절차			
주민의견 제출 →	접수 →	의견수렴 여부 결정 →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주민	사업자/ 해당 행정기관	사업자/ 해당 행정기관	사업자/ 해당 행정기관

210㎜×297㎜[백상지 80g/㎡]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16. 11. 30.>

의견진술자 추천서

사업명		
사업장 위치		
사업자		
의견진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진술하려는 환경보전방안 등 의견의 개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에서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사람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사업명			
사업장 위치			
사업자			
공청회 주재자			
개최일시			
개최장소			
참석인원			
의견진술 요지 및 사업자 의견 (의견진술자가 많은 경우 별지로 첨부)	의견진술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진술 요지		
	사업자 의견		
	의견진술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진술 요지		
	사업자 의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및 제40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알립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공청회 참석자(주민이 추천한 의견진술자 포함) 명단 1부

처리절차

공청회 개최 요구 (주민) → 접수 (사업자 또는 해당 행정기관) → 공청회 개최 (사업자 또는 해당 행정기관) → 공청회 개최결과 통보 (사업자 또는 해당 행정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18. 11. 29.>

의견 재수렴 신청서

계획명 또는 사업명		
계획의 범위 또는 사업장 위치		
계획수립기관 또는 사업자		
의견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주민의견 재수렴 신청 사유		

「환경영향평가법」 제15조제2항,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의견 재수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첨부서류	1. 의견의 재수렴 신청 사유와 그 근거가 명시된 자료 2. 의견의 재수렴을 위한 최소신청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10㎜×297㎜[백상지 80g/㎡]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12.2.>

협의내용 반영결과(조치결과·조치계획) 통보서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나. 사업장 위치:

다. 사업시행자(전화번호):

라. 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

마. 승인기관명:

2. 사업계획등 (승인)내용

구 분	협의내용	사업계획(승인) 내용	협의내용 반영서류	비고

3. 참고사항

작성요령
1. 사업계획 (승인)내용란에는 시행방법, 시행시기 등 승인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2. 협의내용 반영서류란은 협의항목별로 설계보고서·설계도면·예산서 등(이하 "설계보고서등"이라 한다)의 반영서류명과 협의내용이 반영된 해당 서류의 페이지를 적고, 설계보고서등에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반영할 사항이 아닌 내용인 경우에는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명을 적으며,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3. 비고 란에는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4. 참고사항 란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47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임을 시·도에 통보한 날짜 및 대상기관(부서명 포함)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table>
<tr><td colspan="6">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td></tr>
<tr><td colspan="6">1. 사업개요</td></tr>
<tr><td colspan="3">사업명</td><td colspan="3">사업자</td></tr>
<tr><td colspan="3">사업승인기관</td><td colspan="3">사업승인일</td></tr>
<tr><td colspan="3">협의기관</td><td colspan="3">협의일</td></tr>
<tr><td colspan="3">사업착공(예정)일</td><td colspan="3">사업준공(예정)일</td></tr>
<tr><td colspan="2" rowspan="2">협의내용 관리책임자</td><td colspan="4">소속</td></tr>
<tr><td colspan="4">성명</td></tr>
<tr><td colspan="6">사업규모</td></tr>
<tr><td colspan="6">사업내용</td></tr>
<tr><td colspan="6">2. 협의내용 이행계획</td></tr>
<tr><td rowspan="2">① 구분</td><td rowspan="2">② 협의내용</td><td colspan="4">③ 이행계획</td></tr>
<tr><td>④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td><td colspan="2">⑤ 이행주체</td><td>⑥ 이행예정시기</td></tr>
<tr><td>전체</td><td></td><td></td><td colspan="2"></td><td></td></tr>
<tr><td>항목별
·
·</td><td></td><td></td><td colspan="2"></td><td></td></tr>
<tr><td colspan="6">3. 협의내용 이행현황(작성 기준일: 년 월 현재)</td></tr>
<tr><td>⑦ 공정률(%)</td><td>⑧ 이행(조치) 내용</td><td>⑨ 이행 완료일자</td><td colspan="3">⑩ 미이행 사유 및 향후 대책</td></tr>
<tr><td></td><td></td><td></td><td colspan="3"></td></tr>
</table>

작성요령

1. ② 협의내용은 각 항목별·단위 협의내용(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별로 작성한다.
2. ③ 이행계획은 협의내용(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 이행을 위해 저감시설의 설치계획(시설수, 규모 또는 규격 등)이나 조치해야 할 계획을 기재하되,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과 이행예정시기는 사업의 진척상황 등에 따라 당초 계획과 다른 경우 수정할 수 있다.
3. "3. 협의내용 이행현황"은 공사 착공이후 작성시점까지의 이행내용을 누적적으로 기재하되,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는 작성하여야 한다.
4. ⑧ 이행(조치) 내용은 ④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과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5. ⑩ 미이행 사유 및 향후 대책은 사업추진 일정의 지연 또는 기간 미도래 등으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이행 사유와 향후 대책을 기재한다.

210㎜×297㎜[백상지 80g/㎡]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 ]지정 [ ]변경 통보서

사업명

사업자

사업장 위치

공사기간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속	
	직책	
	지정일	
	자격증	명칭
		번호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변경)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승인기관의 장·환경부장관 귀하

210㎜×297㎜(백상지 80g/㎡)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11. 30.>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 년도 공사/운영시 제○차년도 조사결과)

(제1쪽)

1. 사업개요

가. 일반현황

사업명(사업유형)		
사업장소재지		
사업자(시공사)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협의기관 및 협의내용관리기관		
승인기관		
평가 협의일(년/월/일)		문서번호
재(변경)협의일(년/월/일)		문서번호
사업계획 승인일(년/월/일)		문서번호
사업계획 변경승인일 (년/월/일)	1차	
	2차	
	3차	
착공(예정)일(년/월/일)		
준공(예정)일(년/월/일)		
사업규모		
사업비(억원)		
공정률(%)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	전체	년 월 ~ 년 월(년)
	이번회	년 월 ~ 년 월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소속:	직책: 성명:

210mm×297mm[백상지 80g/㎡]

(제2쪽)

나. 사업진행 현황

시설별 규모	

※ 단지별 부지면적 및 시설물 설치내용을 구분(예: 관광단지인 경우에는 관광객이용시설 지구, 골프장 지구, 스키장 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사업지구 위치도를 첨부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의 면적과 사업계획 승인 시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공정률	

※ 전체 공정률 및 세부 공정률(토목·건축·조경 등)과 주요시설물별 설치현황 등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사업의 추진경위

추진경위	

※ 현재까지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날짜 및 주요내용을 적습니다.

3.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 조치 등

가.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구분		환경영향평가서					평가서(협의의견 포함) 제시 사후환경조사계획				사후환경영향 조사결과			검토결과 (원인분석 포함)	조치 사항
		환경현황			환경영향 예측										
항목	세부 항목	조사 지점	조사 일시	조사 결과	저감 방안 수립 전	저감 방안 수립 후	조사 지점	조사 지점 특징	조사 지점 선정 사유	조사 주기	조사 지점	조사 일시	조사 결과		
대기질															
수질 (지표·지하)															
해양 환경															
지형·지질															
동·식물상															
소음·진동															
그 밖의 항목															

※ 환경영향평가서의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협의의견 포함)에 따른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록)하고, 조사 지점도를 첨부합니다.

(제3쪽)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평가

조치사항	환경피해발생 및 피해발생우려 내용
	환경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내용 및 결과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 통보일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법정 보호 동·식물의 발견, 협의기준의 초과 등에 따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평가결과	

※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동·식물상,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도 등의 환경현황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착공연도부터 현재까지 비교·분석하여 평가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도록 비교·분석표 및 그래프 등으로 표시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서의 예측치와 조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마련한 저감방안을 적습니다.

4. 협의내용 관리·이행 현황

협의내용 관리 현황	

※ 협의내용 관리를 위한 조직 및 관리자별 업무내용,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이행계획,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른 환경관리비의 집행계획 등의 협의내용 관리현황을 적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일	사업계획 변경내용	환경보전방안 강구내용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제14조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지 않고 사업자가 자체 변경한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내용 및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강구내용을 적습니다.

	협의내용	조사일시	공정률 (%)	이행내용	미이행사항 및 사후대책
협의내용 이행 현황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협의의견 포함)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적되, 이행현황을 동·식물상, 지형·지질, 대기질, 수질 등 각 항목별로 작성하고, 공정률은 토목·건축·조경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이행사항에 대하여는 사후대책을 적고, 사업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

(제4쪽)

5.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

조사일시	승인 또는 협의기관	협의내용 미이행사항	미이행사항 조치내용 (또는 계획)	비고

6.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현황예측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측정항목, 지점, 주기 등의 변경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습니다.

7. 부록

가. 사후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

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조사 분야별 조사자 인적사항

구분		소속	성명	직책	자격 및 면허
총괄					
대기환경	기상				
	:				
수질환경	수질(지표 · 지하)				
	:				
토지환경	토지이용				
	:				
자연생태환경	동 · 식물상				
	:				
생활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				
사회 · 경제환경	인구				
	: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

다. 인 · 허가 등 관련 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 5. 25.>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 착 공 / [ ] 준 공 / [ ] 공사 중지 / [ ] 공사 재개 통보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사업 현황	사업명	
	대표자 성명	
	사업장 위치	
	평가 협의일	
통보 내용	착공일	
	준공일	
	공사 중지 · 공사 재개	중지일
		공사 재개일
		중지 또는 재개 사유
		공사중지에 따른 환경보전 조치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 ] 착 공 / [ ] 준 공 / [ ] 공사 중지 / [ ] 공사 재개 을(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승인기관의 장·환경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 년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결과 통보서

(기관명:)

1. 총괄

조사 대상사업장 수 (개소)	조사 사업장 수 (개소)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 수 (개소)	이행조치요청 사업장 수 (개소)	

2. 세부 내용

①일련번호	②사업명 (사업시행자)	③소재지	④조사일	⑤조사결과 (미이행사항)	⑥조치내용	⑦조치결과

※ 작성요령

④란에는 해당 연도 중 조사일을 적습니다.

⑤란에는 조사 결과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항을 적습니다.

⑥란에는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이행조치요청, 공사중지요청, 고발 등)을 적습니다.

⑦란에는 조치결과를 이행 완료(공사일시중지 포함), 이행 중, 이행 예정, 미이행(일부 또는 전부), 현지 재조사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⑧란에는 협의내용관리와 관련한 특이사항을 적습니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12.2.>

환경영향평가업 [ ]제1종 [ ]등록 / [ ]제2종 [ ]변경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등록 20 일 변경 7 일

신청인	기관(업체)명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평가담당부서 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변경내용 및 사유(변경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제69조제2항 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

[ ]제1종 [ ]등록
[ ]제2종 [ ]변경등록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시설 및 장비 명세서(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변경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필요시)	→ 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환경부/ 대행기관	환경부/ 대행기관	환경부/ 대행기관	환경부/ 대행기관	환경부/ 대행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12.2.>

(앞쪽)

등 록 번 호 제 - 호

제( )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기관(업체)명칭		
대 표 자 성 명		
주사무소	소 재 지	
	전화번호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전화번호	
실 험 실	소 재 지	
	전화번호	
기 타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 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뒤쪽)

〈변경사항〉

연 월 일	내 용	확 인

〈행정처분사항〉

연 월 일	내 용	확 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19. 12. 30.>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 환경영향평가등 업무명						
2. 환경영향평가등 업무개요						
대행자 (대표회사)	상호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3. 환경영향평가등 업무 대행개요						
대행금액	원	계약일		준공 예정일		
해당 연도 대행금액	원	해당 연도 계약일		해당 연도 준공 예정일		

4. 환경영향평가등 업무별 재대행 예정계획(해당 연도)

재대행할 주요 업무	재대행자				재대행 용역			
업무명	상호명 및 대표자 성명	소재지	등록업종	① 선정 방식	세부 업무내역	재대행 금액 ② 재대행 부분금액(A)	③ 재대행 계약금액(B)	④ 재대행률 (B/A)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첨부서류	1. 재대행하려는 환경영향평가등의 개요 2.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대상 규모, 평가에 소요되는 금액 및 참여하는 기술인력 등이 명시된 환경영향평가등 업무 명세서

작성방법

1. ①란의 선정방식은 재대행자를 선정한 주요 방식으로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등을 말합니다.
2. ②란의 재대행 부분금액은 재대행 업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및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3. ③란의 재대행 계약금액은 대행자가 재대행자와 재대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합니다.
4. ④란의 재대행률은 재대행 계약금액을 재대행 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5. 신청인이 공동일 경우 공동신청인을 모두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의3서식] <개정 2018. 11. 29.>

환경영향평가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0일

승계인	상 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종 별	환경영향평가업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피승계인	상 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종 별	등 록 번 호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승계구분	[ ] 상속	[ ] 양도·양수	[ ] 합병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 고	→	접 수	→	서면심사	→	현장확인 (필요시)	→	결재	→	통보
신고인		수탁기관		수탁기관		수탁기관		수탁기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4.12.2.>

환경영향평가업 [ ]폐업 [ ]휴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기관(업체)명칭			
등록번호		등록일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폐업(휴업) 일			
사유			

「환경영향평가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 폐업·휴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수리 통보
신고인		환경부/ 대행기관		환경부/ 대행기관		환경부/ 대행기관		

210㎜×297㎜[백상지 80g/㎡]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9. 12. 30.>

[ ] 체결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 ] 변경 실적보고서
[ ] 이행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 보고인 현황

기관(업체)명		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2. 대행사업 현황

대행사업명			
사업 소재지			
사업규모		사업기간	
계획 및 사업의 종류		계획 및 사업의 코드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			
대행사업의 개요			

3. 계약 현황

발주자(기관)		전화번호	
계약자	주 계약자 :	지분금액(백만원) 및 지분율(%)	
	(환경영향평가업 등록번호 :)		
	공동계약자 :	지분금액(백만원) 및 지분율(%)	
	(환경영향평가업 등록번호 :)		
	재대행자(환경영향평가업자만 기재) :	재대행금액	백만원
	(환경영향평가업 등록번호 :)	재대행계약기간	
(변경)계약일자		(변경)계약기간	
(변경)계약금액	백만원	낙찰률	%
협의내용 통보일자		준공일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4. 참여 기술자 현황

대행계약(변경계약) 체결 시

연번	소속회사	성명	생년월일	기술등급	평가 분야	전문 분야	담당 업무	수행 형태	참여 기간

대행계약 이행 시

연번	소속회사	성명	생년월일	기술등급	평가 분야	전문 분야	담당 업무	수행 형태	참여 기간

「환경영향평가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대행계약의 체결(변경) 실적 보고: 계약서(대행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내용이 반영된 계약서를 말합니다) 사본 1부 2.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보고: 대행계약의 발주자가 발급한 대행계약 이행증명서(참여 기술자 명단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및 세금계산서 사본(「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발주청이 아닌 자가 발주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작성방법

1. 보고인 현황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현황을 작성하되, 공동계약인 경우 주 계약자가 작성하고,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재대행한 경우에는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작성합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이 변경된 경우(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참여 기술자)에는 변경보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2. 대행사업 현황은 다음에 따라 작성합니다.
   - 대행사업명: 대행계약서에 기재된 사업명을 기재
   - 사업 소재지: 대행사업 예정지의 대표 소재지를 기재
   - 사업규모: 사업의 면적 등 규모를 단위와 함께 기재
   - 사업기간: 사업의 예정된 사업기간을 기재
   - 계획 및 사업의 종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별표 3, 별표 4에 따른 해당 계획·사업의 종류를 기재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는 별표 3에 따른 해당 사업의 종류를 기재
   - 계획 및 사업의 코드: 계획 및 사업의 종류에 따른 코드번호를 기재
     (예시) 별표 2 1. 정책계획 중 바. 산지의 개발 1) 「사방사업법」 제3조의2에 따른 사방사업 기본계획인 경우 "별표 2-1-바-1)"로 기재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환경보전방안(환경영향평가등의 변경협의), 기타 등으로 기재
3. 계약 현황은 다음에 따라 작성합니다.
   - 계약자: 단독 계약인 경우 주 계약자 현황만 기재하고, 공동계약인 경우 공동계약자 모두를 기재하며, 재대행자는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재대행을 준 경우에만 작성
   - 낙찰률은 발주금액 대비 낙찰(계약)금액의 비율을 기재
4. 참여 기술자 현황은 대행계약 체결 보고 시 참여 기술자를 기재하고, 참여 기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행계약 이행 실적 보고시 변경 전후를 알 수 있도록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소속회사: 참여 기술자가 소속된 회사명
   - 기술등급: 기술자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등급을 기재, 등급이 인정된 기술자가 아닌 경우에는 보유 기술자격 또는 주 경력을 기재
   - 평가 분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항목(자연생태환경 분야, 대기환경 분야, 수환경 분야, 토지환경 분야, 생활환경 분야, 사회환경·경제환경 분야)의 구분에 따른 해당 분야를 기재
   - 전문 분야: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토양환경, 해양, 기타 분야 중에서 해당 분야를 기재
   - 참여 기간: 참여 기술자가 대상사업에 참여한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
   - 담당 업무: 총괄 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분야별 평가자, 평가서 검토·협의, 용역감독자 중에서 해당 업무를 기재(구분이 어려울 경우 직접 기재)
   - 수행 형태: 단독계약, 공동계약, 재대행 중에서 구분하여 기재(구분이 어려울 경우 직접 기재)
5.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의2서식] <개정 2019. 12. 30.>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증명사진 (3.5cm×4.5cm)
		한자		
		영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국적	
	주소			

근무처	회사명(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입사일

평가분야	해당분야	00분야	00분야	00분야
	경력기간	0년0월	0년0월	0년0월

학력	재학기간	졸업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 . . ~ . . .			
	. . . ~ . . .			

기술자격	합격일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 . .		
	. . .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3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2.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사본 1부 3.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1부 4.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환경영향평가 경력확인서[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만 해당합니다] 및 해당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교육·훈련 이수증 사본 1부 6.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발주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상훈(賞勳) 증서 사본 1부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유의사항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 신청 시 신청인의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의3서식] <개정 2019. 12. 30.>

(앞쪽)

환경영향평가 경력확인서

인적사항	①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주소		
소속회사	③ 회사명	대표자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④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⑤ 입사일	⑥ 퇴사일	전화번호

기술경력

연번	⑦ 사업 기간 및 참여 기간		⑧ 참여 사업명			⑨ 발주자(청)	
	⑩ 사업종류	⑪ 사업코드	⑫ 평가 분야	⑬ 평가 종류	⑭ 전문 분야	⑮ 담당 업무	⑯ 수행 형태
	⑰ 대행사업 개요(70자 이내 공란 포함)					⑱ 대행금액 (백만 원)	
	. . . ~ . . .						
	. . . ~ . . .						

위와 같이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 직인

유의사항

1. 2장 이상의 경력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술경력만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장에 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간인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
2. 대리인 작성 시 작성인의 실명 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210㎜×297㎜[백상지(80g/㎡)]

(뒤쪽)

작성방법

1. ①란의 (서명 또는 인)에는 환경영향평가 기술인력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②란의 주소가 이미 신고한 주소에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주소를 적고 그 뒤에 (변경 요청)이라고 기재합니다.
3. ③란의 회사명은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를 정확히 적어야 하며, 상호가 명칭 변경 또는 흡수합병으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상호를 적고 그 뒤에 (명칭 변경) 또는 (흡수합병) 중 어느 하나를 적어야 합니다.
4. ④란의 등록번호는 관할 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시 발급받은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5. ⑤란의 입사일은 소속 회사의 입사일을 기재합니다.
6. ⑥란의 퇴사일은 소속 회사의 퇴사일을 말하며, 현재 근무 중인 경우 "근무 중"으로 기재합니다.
7. ⑦란의 사업 기간은 해당 사업의 착수일~준공일을 기재합니다. 사업 기간이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2018. 1. 1. ~ 2018. 5. 31., 2018. 9. 1. ~ 2019. 12. 31. 과 같이 기재합니다. 참여 기간은 기술자가 해당 사업에 참여한 기간으로 참여 기간을 기재하는 방법은 사업 기간을 기재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8. ⑧란의 참여사업명은 환경영향평가 기술인력이 실제 참여한 대행계약 또는 실적보고서에 표기된 사업명을 기재합니다.
9. ⑨란의 발주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을 발주한 기관명 · 업체명 또는 개인명을 적고 하도급을 받은 경우 발주자 및 원도급자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10. ⑩란의 사업종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별표 3, 별표 4에 따른 해당 계획·사업의 종류를 기재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는 별표 3에 따른 해당 사업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11. ⑪란의 사업코드는 ⑩란의 사업종류에 관한 코드를 기재합니다.

(예시) 별표 2의 1. 정책계획 중 바. 산지의 개발 1) 「사방사업법」 제3조의2에 따른 사방사업 기본계획인 경우 "별표 2-1-바-1)"로 기재

12. ⑫란의 평가 분야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항목(자연생태환경 분야, 대기환경 분야, 수환경 분야, 토지환경 분야, 생활환경 분야, 사회환경·경제환경 분야)의 구분에 따른 해당 분야를 기재합니다.
13. ⑬란의 평가 종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환경보전방안(환경영향평가 등의 변경협의), 기타 등으로 기재합니다.
14. ⑭란의 전문 분야는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토양환경, 해양, 기타 분야 중에서 해당 분야를 기재합니다.
15. ⑮란의 담당 업무는 사업총괄 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분야별 평가자, 평가서 검토·협의, 용역 감독자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16. ⑯란의 수행 형태는 단독계약, 공동계약, 재대행 중에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구분이 어려울 경우 직접 기재).
17. ⑰란의 대행사업 개요는 환경영향평가 기술인력이 참여한 용역 규모 등을 적고, 공동도급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면 됩니다.

※ 대행사업 개요는 주요 내용만 최대 70자 이내(공란 포함)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18. ⑱란의 대행금액은 환경영향평가 기술인력이 참여한 대행금액을 기재하고, 공동도급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면 됩니다.

(예시) 대행금액: 1,000(백만원)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의4서식] <개정 2019. 12. 30.>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소속 회사	회사명(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 분야	직무 및 평가 분야	
경력 구분	□ 사업자 확인 경력 □ 발주자 확인 경력	
발급 사유		
발급 번호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증명사진(3.6센티미터×4.6센티미터) 1장(최초로 발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유의사항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신청·수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수령인)의 실명 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의5서식] <개정 2019. 12. 30.>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앞쪽)

발급번호	NO.		사 진 (3.5cm×4.5cm)
경력 구분	□ 사업자 확인 경력 □ 발주자 확인 경력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술자등급		평가분야
	인정일	등 급	
등급 및 평가 분야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국가 기술자격						

	졸업일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학력				

	교육기간	교육기관명	과정명
교육훈련			

	수여일	수여기관	종류 및 근거
상훈			

	벌점			
	제재일	종류	근거	제재기관
벌점 및 제재사항				

	근무기간	상호	근무기간	상호
근무처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g/㎡)]

(뒤쪽)

주요 경력

연번	사업기간(일수)	사업명		발주자	평가 종류	담당 업무
	참여기간(일수)	사업 종류	사업 코드	평가 분야	전문 분야	수행 형태
	용 역 개 요				용역 금액 (백만원)	경력 구분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직인

유의사항

1. 본 경력증은 신고 구분에 따라 사업자 확인, 발주자 확인으로 구분하여 발행됩니다.
2. 본 경력증은 해당 기술자 또는 소속 회사에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210㎜×297㎜[백상지(80g/㎡)]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의6서식] <신설 2017. 5. 30.>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변경사항

[ ] 근무처	전 소속회사	회사명(대표자)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록번호
		입사일	퇴사일	전화번호
	현재 소속회사	회사명(대표자)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록번호
		입사일		전화번호

[ ] 기술자격	변경 전	변경 후
[ ] 학력	변경 전	변경 후
[ ] 경력	변경 전	변경 후
[ ] 교육·훈련	변경 전	변경 후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3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력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유의사항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 신청 시 신청인의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의7서식] <신설 2017. 5. 30.>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대장

일련번호	성명	생년월일	국가기술자격	최종 학력	기술등급	발급일	발급구분	담당자확인

※ 발급구분은 신규 또는 재발급으로 표기합니다.

210㎜×297㎜[백상지(80g/㎡)]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제 회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원본)

(앞 쪽)

응시번호			사진 (3.5cm×4.5cm)
응시자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일반전화)	(휴대전화)	
	주소		

시험면제 사항 (해당자만 작성)	[ ]1차시험 전과목	제 회 1차시험합격(응시번호 번)
	[ ]1차시험 일부과목	아래 각호의 면제사항 표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및 별표 8에 따른 협의업무 실무경력 공무원 및 평가분야 실무경력 기사, 기술사만 해당 [ ] **환경정책, 환경영향평가제도**,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실무경력 5년 이상 [ ] **환경정책, 환경영향평가제도**,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실무경력 7년 이상 [ ]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실무**, 기술사 취득후 실무경력 5년 이상 [ ]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실무**, 기사 취득후 실무경력 9년 이상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 응시자격 증명서류 : 해당 기관에서 발급·확인한 기술자격, 경력, 학력 증명서류 * 일부과목 면제자격 증명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 해당 기관에서 발급·확인한 기술자격, 경력 증명서류	수수료 원

자르는 선

제 회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응시표

응시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 일시 및 장소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직인

※ 주의사항

○ 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8일 이내(토·일요일 제외)에 응시자격 및 면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졸업증명서, 정해진 경력증명서, 기술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필기시험 합격이 원천무효처리 됩니다. 다만, 외국서류 구비 사유로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수험자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응시자격 증명서류 제출을 최종 합격자 발표 7일 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회차의 실기시험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자격증 발급 안내 : 준비물(신분증, 증명사진 1장, 발급 수수료), 발급 장소(수탁기관 발급처)

○ 인터넷 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및 인터넷 자격증 발급은 (수탁기관 홈페이지 주소) 각종 문의사항은 (수탁기관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수험원서 작성방법

● 다음 방법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사진란 :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반명함판(3㎝× 4㎝) 규격의 상반신 사진을 붙여야 합니다.
2. 모든 내용은 정자로 작성해야 하며, 특히 숫자는 명확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3. 제출일 : 수험원서 원본과 수험표에 제출일을 쓰셔야 합니다.
4. 성명 : 한글로 적되 원본의 한자란은 한자를 적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6.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를 칸에 맞추어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6. 전화번호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7. 주소 : 주소는 주민등록표에 따른 주소로 작성하되, 통·반(아파트인 경우 동·호수)까지 적어야 합니다.
8. 면제신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3조 및 별표8에 따른 필기시험 면제(시험과목 일부 면제 포함) 해당자로서 면제를 원하는 사람만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면제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시할 것)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원서를 잘못 작성하여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행기관이 책임지지 않으므로 이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2. 접수된 수험원서, 그 밖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수험자는 수험(1차, 2차시험)시부터 국가기술자격증 발급 시까지 이 수험표를 깨끗이 보관해야 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해당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실시되는 2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시험을 면제받습니다.
4.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는 수험표에 적힌 것과 공고된 것을 반드시 대조·확인하고, 실기시험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5. 수험자는 필기시험 시 (1)수험표 (2)신분증 (3)검은색 사인펜 (4)검은색 또는 파란색 볼펜(연필제외) 등을 지참하여 지정된 입실시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수험자는 시험시간에 필기도구 및 계산기를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지 못하며,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를 제외한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를 지참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수험자가 환경영향평가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됩니다.
8. 정해진 시간 안에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9. 수험원서 접수처 및 검정장에는 주차시설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12.2.>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표지 앞쪽)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환 경 부
MINISTRY OF ENVIRONMENT

(표지 뒤쪽)

ENVIRONMENTAL IMPACT
ASSESSOR

CERTIFICATE

76mm×116mm(고급비닐 200g/㎡)

비고 1. 검은색 표지
2. 모든 글자 및 무궁화 무늬는 금색

(1쪽)

주 의 사 항

1.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은 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시해야 합니다.

2.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등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6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취소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됩니다.

3.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2쪽)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자격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사진
(2.5cm×3cm)

위 사람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합격 연월일 : 년 월 일
발급 연월일 : 년 월 일

환경부장관 직인

(3쪽)

행정처분 내용

처분일자	정지기간	정지사유	기록자 인

76mm×116mm(보존용지(1종) 120g/㎡)

(4쪽)

비고

변경사항

날짜	변경항목	변경 후 사항	확인
. .			
. .			
. .			

비고

76mm×116mm(보존용지(1종) 120g/㎡)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 ] 재발급 [ ]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관리번호	접수일	처리자 성명	처리기간 재발급 15일 기재사항 변경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기재사항 변경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의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주민등록증, 구(舊) 자격증(분실자 제외), 증명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2.5cm×3cm) 1장, 변경사항 증명서류(해당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제1쪽)

환경영향평가사 명부

	사 진 (반명함판) (3cm×4cm)

환경영향평가사	성명 (한자)	생년월일
	주소	
	학력 학교 과 년(졸업 · 수료)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 . .
근무처	기관(업체)명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기 타 자 격	자 격 명(자격번호)	자격취득일	발급기관

자격취득이전 실무경력

근무처	근무기간	직위	직무내용
	. . . ~ . . .		

210mm×297mm(보존용지(1급) 120g/㎡)

(제2쪽)

자격증 재발급

재발급일자	재 발 급 사 유	기록자인

교 육 훈 련

기 간(시간)	과 정 명	기관명

행정처분사항

자격취소

취소일자	취소사유	처분권자	기록자인

자격정지

처분일자	정지사유(기간)	처분권자	기록자인